

(온라인) 2025. 7. 15.(화) <mark>국무회의 종료 시</mark> 보도시점 (지 면) 2025. 7. 16.(수) 조간

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'모성보호시간' 사용 보장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개정안 7월 15일(화) 국무회의 의결
- □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'모성보호시간' 사용이 보장되고,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.
- □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대통령령) 개정안이 7월 15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22일(화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 - 이와 함께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(행정안전부예규)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.
- □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□ 첫째,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.
 -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,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.
 -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되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.

- □ 둘째,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'임신검진 동행휴가'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 -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,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.
 - 이번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,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.
- □ 셋째,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.
 -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(단태아 20일, 다태아 25일)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(다태아 150일)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.
 -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(다태아 150일)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- □ 김민재 차관은 "임신·출산·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"라고 밝히며,
 - "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자치분권국	책임자	과 장	구효선 (044-205-3341)
	지방인사제도과	담당자	사무관	이명아 (044-205-3357)





참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·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 주요 개정내용

구	분	현 행	개 선	비고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(7.22. 시행)	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	○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시 연가 사용	○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시 10일의 휴가 부여	국가직 동시
	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보장	○ 인력운영 상황, 공무수행의 필요성 등 고려하여 승인	○ <mark>임신 후 12주 이내</mark> 또는 32주 이후에는 신청 시 반드시 허가	
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(7.22. 시행)	배우자 출산휴가 [*] 출산 전 사용 허용 * 단태아 20일, 다태아 25일		○ 배우자 출산 전·후 사용 가능 -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(다태아 150일) 이내 사용 가능	국가직 동시